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2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0. 20.

II . 제안이유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 간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조례에 띄어쓰기 오류, 중복 표현 등이 존재하여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 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5급 이상 상급기관으로 변경 (안 제2조제1항)

2.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확대 (안 제3조제1항제7호 삭제)
3. 직장협의회설립증 교부 기한 7일에서 3일로 단축 (안 제4조제4항)
4.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 간 합의는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 (안 제11조제1항)
5. 협의회 해산 시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 신설 (안 제12조제4항 신설)

####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7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4.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1.9.7.~9.27.)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별첨 6)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29호로 제출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중복 표현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공무원직장협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5516호, 1988.2.24.제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적 성격의 협의체로, 서울시교육청도 2010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직장협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직장협회가 2006년 이후 공무원노조가 설립되면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sup>1)</sup>
- 따라서 동 조례는 이를 적용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

1)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직장협회를 해산하고 공무원노조가 설립됨.

- 그러나 상위법령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여전히 조례로 위임<sup>2)</sup>하고 있고<sup>3)</sup>, 실제 직장협의회 해산의 계기가 되었던 공무원노조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공무원이 직장협의회 운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sup>4)</sup>,

향후 필요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시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동 조례는 비록 현재는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까.

[표-1]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 현황

구분	단체명
교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li> <li>- 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본부(한교조)</li> <li>- 대한민국교원노동조합서울지부(대한교조)</li> <li>-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li> <li>-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li> </ul>
소계	5개
공무원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육노조)</li> <li>-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li> <li>-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한공노)</li> <li>-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민공노)</li> <li>-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사서노)</li> <li>- 전국 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전일노)</li> <li>-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서울시교육청지부(통공노)</li> </ul>

2)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3) 공무원노조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당시 공무원 노조가 허용되었음을 이유로 직장협의회법 폐지안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 계속해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4) '2020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 행정안전부, 2020.6., 151쪽 참조  
 - 공무원노조법 시행이후 직협 제도가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9.7%, '현재는 필요하나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0.9%, '필요없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남

소계	7개
교육공무직노조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교육공무진본부서울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 서울일반노동조합학교급식지부 -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소계	5개
합계	17개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설립기관의 범위(안 제2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안 제3조), 협의회의 설립(안 제4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안 제11조), 협의회의 의무(안 제12조)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붙임1] 참고)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1] 상위법령과 조례개정사항 비교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u>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나</u>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u>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 ----- ----- ----- ----- ----- ----- ----- <u>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u> ----- ----- ----- ----- ----- ----- ----- <u>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u> ----- ----- ---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생략)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생략)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p>	<p>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u>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자를 포함한다.</u>)</p>	<p>1. ----- ----- ----- ----- ----- ----- -----<u>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u></p>
<p>8. 삭제</p>	<p>7. <u>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u></p>	<p>7. <u>(삭 제)</u></p>
<p>② 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u>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u>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p>	<p>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u>제2호의</u>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u>지정하여</u>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 ----- ----- ----- -----<u>∨ 단서의</u> ----- ----- ----- -----<u>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u> ----- -----</p>
<p>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p>	<p>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p>	<p>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p>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p> <p>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b>별지 제3호서식</b>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③</p>	<p>② (생략)</p> <p>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b>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b></p> <p>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b>7일</b>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b>별지 제3호서식</b>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는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b>한</b> <b>다.</b></p> <p>④ ----- ----- ----- <b>3일</b> ----- ----- ----- ----- ----- ----- ----- <b>별지 제3호서</b> <b>식</b>----- ----- -----</p> <p>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p>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회의 대표자 또는 협회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협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 ~ ③ (생략)</p> <p>④ 기관장은 협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p> <p>⑥ 협회와 기관장은 사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p> <p>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p>	<p>⑤ <u>협회</u>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회의 대표자 또는 협회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생략)</p> <p>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u>설립기관의 장</u>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p> <p>⑥ 협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u>회무</u>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u>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u>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p> <p>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u>협회의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u></p>	<p>⑤ <u>가입자격</u>----- ----- ----- ----- ----- ----- ----- ----- -----</p> <p>제10조(협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삭제) ----- ----- ----- ----- ----- ----- -----</p> <p>⑥ ----- ----- <u>사무</u> ----- ----- ----- (삭제) ----- ----- -----</p> <p>제11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u>협회의와 설립기관의 장의 합의는 문서</u></p>

시행령	조례	
	현행	개정안
<p>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협회의 의무)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u>지체없이</u>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2조(협회의 의무)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u>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u>,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u>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u></p> <p>② <u>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2조(협회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경우에는 지체없이</u>, ----- ----- ----- -----.</p> <p>④ <u>협의회가 해산한 때에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 [붙임2]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직장협의회 비교

구 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 제33조</li> <li>○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상 근거 없음</li> <li>○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li> </ul>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 특별시, 도, 시, 군, 구, 교육청 등을 설립 최소 단위로 함</li> <li>○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가능</li> <li>○ 2이상의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설립금지</li> <li>○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 통보</li> </ul>
가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 기준 없음</li> </ul> </li> <li>○ 특정직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교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은 별도 법률 존재(교원노조법)</li> </ul> </li> <li>○ 가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li> <li>-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li> <li>-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전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li> <li>○ 특정직공무원 중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등</li> <li>○ 가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li> <li>-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li> <li>-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li> </ul> </li> </ul>
교섭·협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인정 (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li> <li>-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li> <li>-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가능 (기관장의 성실 협의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의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li> </ul> </li> </ul>
전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 인정(무급휴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 금지</li> </ul>

# 관계 법령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무원직협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7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협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9., 2015. 6. 30.>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 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 안전의 목적상 특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삭제 <2020. 5. 19.>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4조(협회의 설립)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